

우리나라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발전 방안(Ⅱ)

— 외국제도와와의 비교연구 —

박 노 형 (고려대 법대교수)

4) 피해의 결정 및 덤핑수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가. 피해결정의 원칙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위하여는 덤핑의 존재에 더하여 덤핑수입과 동종상품의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또는 실질적 피해의 위협(threat)이 있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어야 한다.

덤핑수입에 의한 피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 반덤핑조치는 특별히 주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는 실질적인(material) 것이어야 하지만, GATT에서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정상적인 수입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ds)의 부과시에 요구되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보다는 보다 덜 엄격한 것이 반덤핑관세의 부과시 요구되는 '실질적 피해'일 것이다. 공정한 수입에 대한 긴급수입제

한조치가 불공정무역행위인 덤핑에 대한 반덤핑관세보다 어렵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며, 이 점에서 피해의 요건이 더 과중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 피해결정의 검토요소

피해는 명백한 증거(positive evidence)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덤핑수입물량과 국내시장에서의 동종상품 가격에 대한 효과 및 국내생산자에 대한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덤핑수입 물량에 관하여 조사기관은 절대적인 또는 상대적인 수입의 증가가 존재하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내시장에서의 가격에 관하여 조사기관은 가격인하(price undercutting) 또는 가격억제(suppression)가 존재하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내 생산자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조사기관은 해당 산업의 실태에 영향을 주는 모든 관련된 경

계요소와 통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누적적 피해

피해의 결정에 있어서 조사기관은 동시에 조사대상인 여러 국가로부터의 덤핑수입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덤핑수입 효과의 누적적 평가는 i) 개별국가의 덤핑마진이 미소 수준(de minimis level)보다 높아야 하며 개별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ii) 수입상품 사이의 경쟁조건과 수입상품과 동종의 국내상품 사이의 경쟁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에 허용된다.

GATT패널은 피해의 결정이 반덤핑협정의 규정에 엄격하게 일치되어 수행되어야 한다고 평결하였다.

라. 덤핑수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덤핑수입의 효과로서 수입국 국내산업계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

여야 한다.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모든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GATT체제의 첫 별도의 협정인 1967년 케네디라운드의 반덤핑협정은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이 입은 피해의 주된 원인(principal cause)이 되길 요구하였지만, 1979년 동경라운드의 반덤핑협정과 1994년 WTO체제의 반덤핑협정은 덤핑수입이 피해의 원인이고 피해의 다른 원인이 덤핑에 귀속되지 말것을 요구할 뿐이다.

5) 반덤핑절차

GATT의 한개의 조문에 불과한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이 세 차례의 별도의 협정 채택으로 보완되었지만, 반덤핑협정에는 반덤핑조사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절차요건만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반덤핑조사의 투명성(transparency)의 보장이 주된 목적이 된다.

가. 반덤핑조사의 개시

a. 반덤핑조사의 신청

반덤핑조사가 개시되기 위하여는 국내산업이 덤핑, 실질적 피해 및 덤핑수입과 실질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거를 포함하여 조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반덤핑조사는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그러한 국내산업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신청될 수 있다.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덤핑수입

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국내산업만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수입상품을 사용하는 다른 국내산업(industrial users)이나 소비자들(representative consumer organizations)도 덤핑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영향을 받게 되고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들은 덤핑의 수입경쟁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한 관련 정보를 조사기관에 제출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반덤핑절차에 간접적으로나마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해당 국내산업이 반덤핑절차를 신청하면 조사기관은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절함(accuracy and adequacy)을 검토하여 반덤핑조사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b. 제3국을 대신하는 반덤핑조치

반덤핑조치는 제3국을 대신하여 부과될 수 있다. 즉 다른 수출국의 덤핑수출로 동종상품을 수출하는 제3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제3국은 수입국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수출국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조치(anti-dumping action)는 동 조치를 요청한 제3국 당국에 의하여 신청된다. 제3국 당국은 덤핑수입에 관한 가격정보와 제3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사실 등 수입국 조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입국은 제3국의 반덤핑조치의 요구에 대하여 해당 덤핑수입이 제3국의 해당산업전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의 여부는 덤핑의 해당산업의 수입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영향이나 해당산업의 전체 수출에 대한 영향만을 근거로 평가될 수 없다.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절차의 진행여부는 수입국이 결정하며, 반덤핑조치를 취할 경우에 수입국은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반덤핑절차의 제소자격

반덤핑조사는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그러한 국내산업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신청될 수 있다.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전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근거로 함으로 일부 국내산업에 의한 반덤핑절차 신청의 남용은 국제무역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과 마찰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반덤핑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국내산업은 다음과 같이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된다. 반덤핑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국내산업은 덤핑수입된 동종상품의 해당산업의 모든 생산자들 또는 전체 국내생산량의 대다수(a major proportion)를 차지하는 생산자들을 의미한다.

하나의 회원국이 시장이 지역별로 분리되어 각각의 시장이 독립

되어 경쟁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각 시장의 국내생산자는 반덤핑절차의 목적상 별개의 국내산업으로 간주된다.

이같은 지역산업에 대한 피해의 결정은 국내산업 전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당해 독립된 지역시장에 덤핑수입이 집중함으로써 해당 지역시장의 생산자 전체 또는 거의 전체에 피해가 발생하면 된다.

둘 이상의 국가가 관세동맹을 구성한 경우에는 그 하나의 통일된 시장(a single, a unified market)의 전역에서 국내산업이 정의된다.

조사기관은 반덤핑조사신청에 대한 국내생산자들의 반응을 검토하여 반덤핑조사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국내산업 부분의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 그룹의 지지를 받아야 반덤핑조사의 신청이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대신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국내생산자 그룹이 해당 상품의 전체 국내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는 반덤핑조사는 개시될 수 없다.

즉, 전체 국내생산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가 반덤핑조사의 신청을 지지하여야 하며, 반덤핑조사의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준 국내산업의 지지가 반대보다 높아야 하며, 반덤핑조사의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준 국내산업의 지지가 반대보다 높아야

한다.

국내산업의 고용인 또는 그들 대표(노조)도 반덤핑조사를 신청하거나 지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생산자 또는 그 종업원들만이 반덤핑조사를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해당 국내산업의 사용자와 노조가 반덤핑절차의 개시에 대한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이다.

다. 반덤핑조사의 절차

반덤핑절차는 덤핑이 존재하는 여부와 덤핑수준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의 두 가지 조사로 이루어진다.

덤핑과 피해의 증거는 반덤핑조사의 개시여부의 결정은 물론 반덤핑관세의 잠정적 적용 및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시까지 반덤핑조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덤핑과 피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분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반덤핑절차는 종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반덤핑관세는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조건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덤핑조사와 병행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반덤핑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의 개시 후 1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a. 미소의 원칙과 반덤핑절차의 종료

덤핑마진이 아주 작거나(de mi-

numis)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덤핑수입물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결정되면 반덤핑절차는 종료된다.

덤핑마진이 2%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덤핑마진은 아주 작은 것으로서 반덤핑절차는 종료된다. 이러한 미소의 원칙(de minimis rule)에 대한 미국의 관행은 덤핑마진이 수출가격의 0.5%보다 낮은 경우에 반덤핑절차가 종료되도록 요구되었기 때문에, WTO체제에서 미국의 반덤핑관세의 부과율은 그만큼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별적으로 수입국내 동종상품 수입의 3% 미만을 차지하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덤핑수입이 수입국내 전체수입의 7% 이하라면, 수입국내 동종상품 수입의 3% 미만을 차지하는 특정 국가의 덤핑수입은 통상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negligible)것으로서 반덤핑절차는 종료된다.

b. 정보의 이용

덤핑조사에서 수출자는 국내 수출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현장조사(on-the-spot investigations) 등을 통하여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다른 국가에서 반덤핑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관련 회사의 동의를 얻고 해당 국가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조사기관이 요청한 정보를 상당한 기간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은 '이용가능한 사실(the facts ava-

ilable)'에 근거하여 예비결정과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사기관의 입장에서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best information available)는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국내산업의 주장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덤핑조사에 있어서 수추자는 조사기관의 정보요청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단 반덤핑절차가 개시되면 해당 수출자는 많은 재정적 시간적 부담을 감내하여야 하므로 반덤핑절차가 보호주의 목적으로 남용될 수밖에 없다.

조사기관에 제출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 경쟁자에게 상당한 이익이 되는 성격의 비밀인 정보나 반덤핑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에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해관계자에게 비밀 아닌 정보의 요약(non-confidential summaries)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c. 표본조사

덤핑마진은 조사대상인 상품의 각각의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 수출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이 반덤핑조사에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 또는 관련된 상품의 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조사기관은 통계적으로 타당한 표본(samples)을 통하여 합리적인 수의 이해관계인이나 상품으로 조사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표본조사는 가능한 한 관련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행되어야 한다. 표본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수출자나 생산자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조사가 조사기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이들에게 개별적인 덤핑마진이 결정되어야 한다.

라. 반덤핑위원회

반덤핑위원회(Committee on Anti-Dumping-Practices)는 각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며, 반덤핑협정이나 회원국들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년에 2회 이상 소집된다.

반덤핑위원회는 반덤핑협정의 이행 및 운용에 대하여 매년 검토하고 그 진전사항을 상무무역이사회에 매년 통고하여야 한다. 반덤핑위원회는 적절한 보조기관(subsidiary bodies)을 설치할 수 있다.

회원국은 자신이 취한 모든 예비 또는 최종 반덤핑조치를 반덤핑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국은 반년마다 직전의 6개월 동안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반덤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반덤핑절차를 개시하고 동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기관과 동 국내절차를 반덤핑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반덤핑협정에 관련된 자국의 법령 및 그 시행상의 변경된 내용을 반덤핑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효도연금”으로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고향에 든든한 농어민 연금이 있습니다.

농어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시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농어민의 생활안정 및 편안한 노후를 약속해 줄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입하신 농어민연금, 그 보험료는 우리 몫입니다.

소를 팔아 등록금을 내주신 부모님의 얼굴...

지문마저 희미해진 거친 손으로 아직도 밭에서, 갯벌에서 땀흘리시는 부모님!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소박한 바램은 남은 여생을 당신 고향에서 맘편히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가입하신 농어민연금 보험료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적은 보험료를 보내드리는 것만으로 부족할지 모르나 부모님 노후를 위한 작은 효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관리공단(Tel:412-2547)